

2026년

대학정보공시 연수 교지 및 교사 시설현황



Tel
053-770-2582/2590

Mail
kimhj@kasfo.or.kr

Date
2026.04.01.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재정통계분석부
김현주 선임행정관

Contents

01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집계 안내

0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3 대학 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5 대학 정보공시 자료 확인 방법

04



I 1.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집계 안내

▶ 01 집계안내

☑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집계·분석·공시 업무

▶ 추진 근거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

▶ 추진 내용

-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및 교육용 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을 집계·분석·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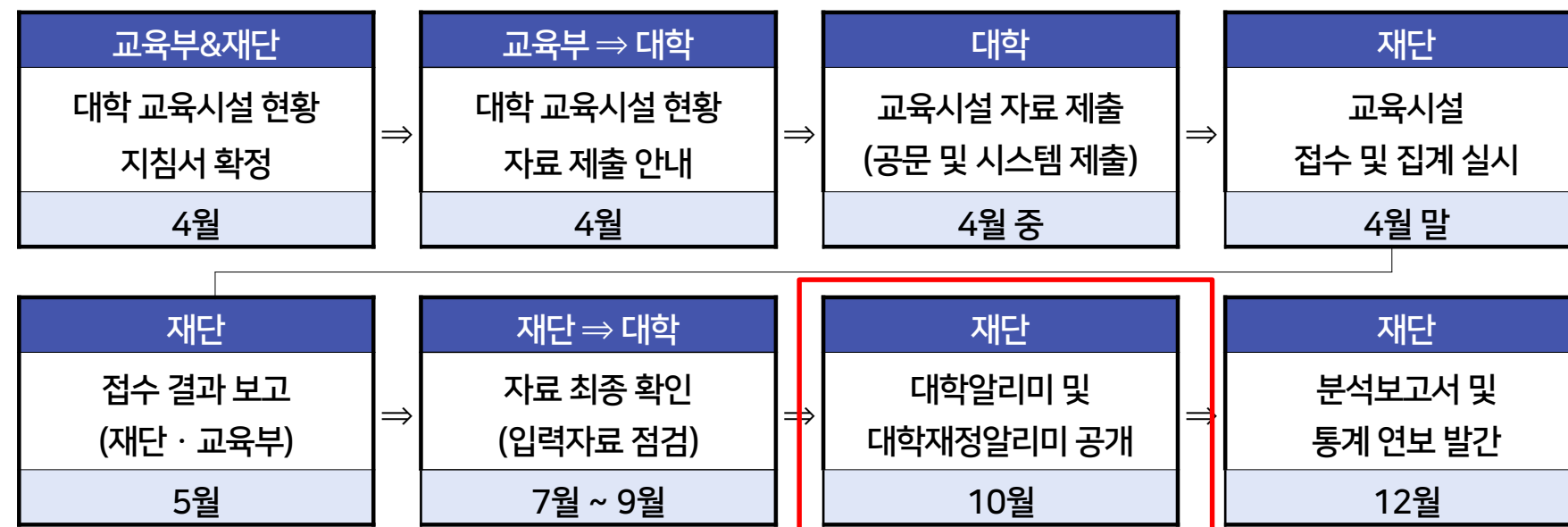
▶ 집계 내용

- 국·공·사립대학 대상 교육용 토지 및 교육용 건물 보유 현황 등

▶ 공시 내용

-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및 (14-라) 교사(校舍) 시설 확보 현황

▶ 공시 절차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지 관련 사항

▶ 02 입력 지침 안내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구분	내용
교지경계선 내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
20km 내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에 위치 ※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km 이내이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 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
20km 내·외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위치
20km 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20km 밖이면서 타 시·군·구)에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부지

※ 교지경계선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의 범위로 인정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반 대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자연녹지, 임야 등 미활용지의 경우 해당 면적은 미사용 토지로 입력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사 관련 사항

▶ 02 입력 지침안내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제4항에 의한 교사시설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구분	내용
교지경계선 내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
20km 내·외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 내의 학생기숙사 ※ 해당 부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학생주거시설이며 학교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 한함
20km 내·외	교지경계선 밖 연구시설로서 해당 부지가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0km 외	교지 밖(20km 밖이면서 타 시·군·구)의 학생기숙사로서 해당 부지가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강의의 경우, 반드시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본·분교 및 캠퍼스의 교지 내 교사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교직원, 일반인 대상 숙소 등 학생기숙사가 아닌 경우, 임차 등 학교 소유가 아닌 경우 제외됨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사 관련 사항

(1) 교사 인정 여부

- 교지경계선, 20km 이내, 20km 외에 따라 교사 인정 여부가 상이함
- 연구시설, 학생기숙사는 시설결정 유무에 따라 교사 인정 여부가 상이함

구분	시설결정 여부	
	(학교) 시설결정	(학교) 시설미결정
교지경계선 내	교사 기준시설	교사 인정
20km 이내	연구시설	교사 인정
		교사 미인정
20km 외	학생기숙사 및 연구시설	교사 미인정

※ 교사기준시설: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2) 교사여부 충족 체크

- 학생기숙사 및 연구시설 중 교사면적에 포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내역 등록 시 교사여부 충족 체크박스 선택 필요 (체크 시 교사면적에 포함)
- 단, 시설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체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필수 첨부

○ 기본정보

학교명	한국사학진흥대학교 [본교]	* 고유번호	4164-6546-546546	* 건물명	
* 취득일자	2018-03-07	* 구내외	20km 외	* 구조	

지원시설

강당		실습공장(전문대만)		학생기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여부충족		학칙으로 정한 시설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0	0	0	0	100	5	0

연구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3항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체크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실험실	대학부설 연구소	학칙으로 정한 시설
200	0	0	0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지 확보율

▶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1) 관련 정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정원에 따라 충분한 교지를 확보해야 함

(2) 관련 근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3) 산출 방식

보유면적¹ / 기준면적²

1. 보유면적 : 교육용 토지 중 “교지 면적”(교지 인정범위 중 하나 이상 해당)
※ 수익용 건물의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는 교지면적 제외
2.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4에 따라 적용

(4) 적용 예외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음
(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은 갖추어야 함)



I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사 확보율

▶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1) 관련 정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함

(2) 관련 근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3) 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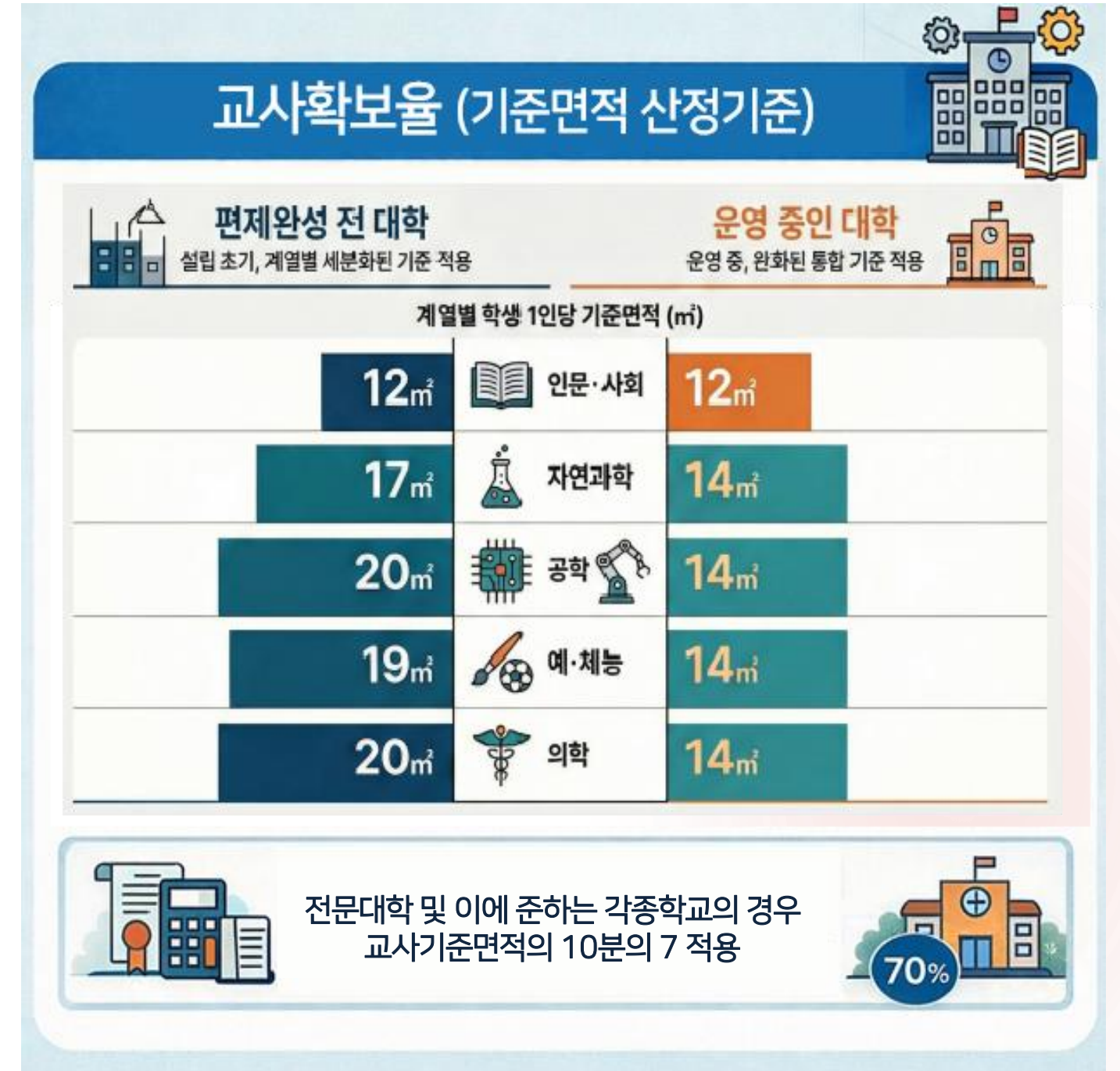
보유면적¹ / 기준면적²

1. 보유면적 : 교육용 건물 중 "교사 면적"(교사 인정범위 중 하나 이상 해당)
2.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3에 따라 적용

(4) 적용 예외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3의 기준면적의 경우, 아래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 ② 운영 중인 대학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지침 안내

01 집계안내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및 임차

▶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임차 조건

- 지상권 또는 5년 이상 유지되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교지 경계선 기준 20km 이내이고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은 대학의 기존 교사확보율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만 임차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 시설의 적정성 및 용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고 교육부령으로 허용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면적 확보 기준
임대 면적을 제외하고도 법정 교사 확보율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동의
구성원 동의 및 학칙 절차
대학평의회 심의 등 학칙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01 임차 요건(빌리는 행위)

- ① 임차한 건축물 또는 토지에 권리를 설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② 대학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가 20km 이내이고 동일한 시군구 위치
- ③ 교사확보율을 100% 초과한 경우에만 임차 가능

☞ 임차사항은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입력 "미대상"

02 임대 요건(빌려주는 행위)

- ①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고 학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② 임대 면적을 제외하고도 교사 확보율 기준 충족
- ③ 임대 전,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구성원 동의 필요

☞ 임대사항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임대시설 현황)

☞ 학생후생복지시설과 일반임대시설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구분	교내 구성원 복지 및 편의	그 외
학교 직접 운영	학생회관	기타시설
외부 위탁 운영	임대시설-학생후생복지시설	임대시설-일반임대시설
교사 인정 여부	교사포함	교사 미포함

3. 대학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정보공시 항목 주요 입력지침

▶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공시항목	토지전체면적	교지 보유면적	부속토지	미사용토지
14-다	㉠	㉡	㉢	㉣

- ㉠ 토지전체면적 :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시설결정지 + 시설미결정지)
- ㉡ 교지전체면적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해 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교지인정범위에 해당되는 면적
- ㉢ 부속토지 : 교육용 건물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른 부속시설이 설치된 토지
- ㉣ 미사용토지 : 교육·연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구분	내용
교지경계선 내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
20km 내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 *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km 이내이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 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
20km 내·외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위치
20km 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20km 밖이면서 타 시·군·구)에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부지

3. 대학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정보공시 항목 주요 입력지침

▶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								

▪ ㉠ 입학정원기준 기준면적 산출방법

- 정원내 학부 (계열별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x 수업연한)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x 수업연한)

- 계열별 시설정원 x 계열별 1인당 기준면적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12		14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 적용

※ 간호학과 4년제 지정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정원에 한해 4년제 대학 기준 적용

연번	학과명	계열	학부 정원내 인원			수업연한 (B)	시설정원 (A*B)
			주간	야간	MAX(A)		
1	영문학과	인문사회	80	-	80	4	320
2	물리학과	자연과학	50	-	50	4	200
3	기계공학과	공학	60	70	70	4	280
4	미술과	예체능	50	40	50	4	200
5	간호학과	전문대 간호학과 4년	70	-	70	4	280
시설정원							1,280

연번	계열별	시설정원(C)	1인당 기준면적(D)	합계(C*D)
1	인문사회	320	12	3,840
2	자연과학	200	14	2,800
3	공학	280	14	3,920
4	예체능	200	14	2,800
5	전문대 간호학과 4년	280	14	3,920
입학정원기준 기준면적				17,280

3. 대학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정보공시 항목 주요 입력지침

▶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㉔								

㉔ 재학생기준 기준면적 산출방법

- 정원내·외 학부(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최댓값) + 정원내·외 대학원 (주간 재학생)

- 계열별 시설정원 x 계열별 1인당 기준면적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4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10의 7 적용

※ 간호학과 4년제 지정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정원에 한해 4년제 대학 기준 적용

연번	학과명	계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6학년		계		대학 시설정원 (A)	대학원 주간 (B)	총 시설정원 (A+B)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1	영문학과	인문사회	350	400	200	300	200	-	100	50	-	-	850	750	850	50	900
2	물리학과	자연과학	110	-	200	-	150	100	100	-	-	-	560	100	560	100	660
3	기계공학과	공학	500	-	300	-	150	-	-	-	-	-	950	-	950	-	950
4	미술과	예체능	30	-	10	-	-	-	200	-	-	-	240	-	240	-	240
5	간호학과	전문대 간호학과 4년	-	-	-	-	40	-	-	-	-	-	40	-	40	-	40
시설정원															2,640	150	2,790

연번	계열별	시설정원(C)	1인당 기준면적(D)	합계(C*D)
1	인문사회	900	12	10,800
2	자연과학	660	14	9,240
3	공학	950	14	13,300
4	예체능	240	14	3,360
5	전문대 간호학과 4년	40	14	560
재학생기준 기준면적				37,260

3. 대학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정보공시 항목 주요 입력지침

▶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㉞			㉟			

▪ ㉞ 및 ㉟ :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1) 교사확보율 산정면적 : **기본시설** + 지원시설 + 연구시설

2) 그 외면적 : 부속시설 + **기타시설**

※ 임대시설 면적 중 '학생후생복지시설' 임대면적은 교사면적에 '포함'

※ 임대시설 면적 중 '기타임대시설' 임대면적은 교사면적에 '미포함'

구분	구분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임대시설	
							학생후생 복지시설	기타 임대시설
진흥대학교	교지경계선 내	2,000	300	500	1,000	800	700	500

구분	구분	교사확보율 산정면적			그 외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진흥대학교	교지경계선 내	2,700	300	500	1,000	1,300

<교사 인정 범위>

구분	구분	시설결정 여부	
		(학교) 시설결정	(학교) 시설미결정
교지경계선 내	교사 기준시설	교사 인정	
20km 이내	연구시설	교사 인정	교사 미인정
		교사 인정	
20km 외	학생기숙사 및 연구시설	교사 인정	교사 미인정

3. 대학정보공시 관련 항목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정보공시 항목 주요 입력지침

▶ 14-라. 교사(校舎)시설 확보 현황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	㉡	㉢			㉣		㉤	

$$\text{㉣} = (\text{교사확보율 산정면적} / \text{입학정원기준 기준면적}) * 100$$

$$\text{㉤} = (\text{교사확보율 산정면적} / \text{재학생기준 기준면적}) * 100$$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미사용토지 오분류로 인한 토지 세부면적 산정 오류

연번	오류 사례
1	○○대학교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학교법인 소유 미사용토지(1,800㎡)를 시설 미결정지에 포함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 시설 미결정지로 등록된 토지

○ 토지정보

전체토지면적	1,800.00	교지전체면적	1,800.00
시설결정합계	0.00	학교법인(a)	0.00
미결정합계	1,800.00	학교법인(b)	1,800.00
부속토지	0.00	미사용토지	0.00
		공유지	0.00
		사유지	0.00
		공유지	0.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토지 보고내역

- **시설미결정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 토지 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자연녹지, 임야, 나대지 등 **미활용지의 경우 미사용토지로 입력**하여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오류사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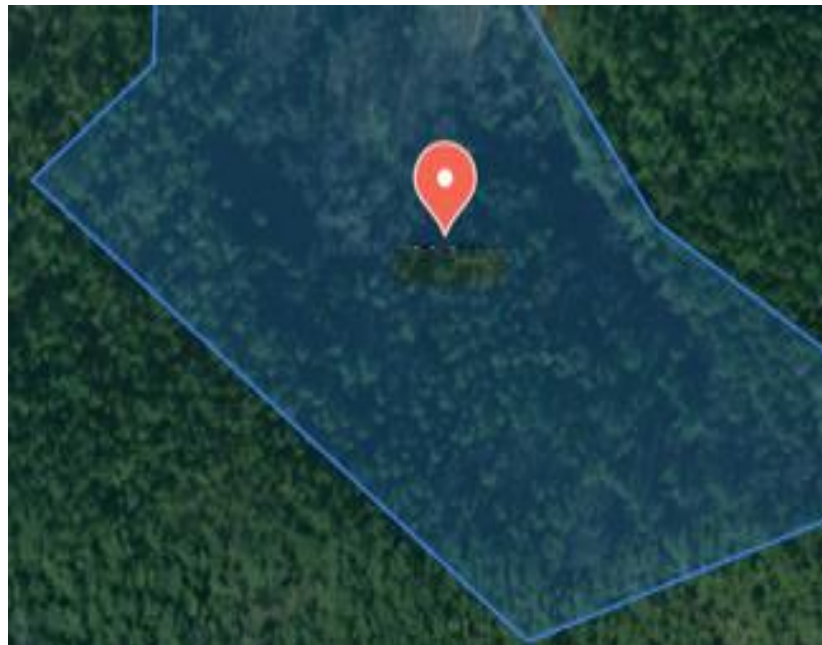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미사용토지 오분류로 인한 토지 세부면적 산정 오류

연번	오류 사례
2	○○대학교에서 실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법인 소유 임야(25,000㎡)를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 부속토지(임야)로 등록된 토지의 위성사진

토지정보

전체토지면적	25,000.00	교지전체면적	0.00				
시설결정합계	0.00	학교법인(a)	0.00	공유지	0.00	사유지	0.00
미결정합계	0.00	학교법인(b)	0.00	공유지	0.00		
부속토지	25,000.00	미사용토지	0.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토지 보고내역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자연녹지, 임야, 나대지 등 미활용지의 경우 미사용토지로 입력하여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부속토지 오분류로 인한 교지 보유면적 산정 오류

연번	오류 사례
3	○○대학교에서 부속초등학교 점유 토지 토지(2,000㎡)를 학교법인 시설결정지에 보고함

오류 예시



▲ 부속초등학교

○ 토지정보

전체토지면적	2,000.00	교지전체면적	2,000.00
시설결정합계	2,000.00	학교법인(a)	2,000.00
미결정합계	0.00	학교법인(b)	0.00
부속토지	0.00	미사용토지	0.00
		공유지	0.00
		공유지	0.00
		사유지	0.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토지 보고내역

- 교육용 건물 중 부속시설*이 설치된 토지 입력 시, 아래에 따라 입력하여야 함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
 - 부속병원 및 부속학교는 시설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속토지로 구분
 - 시설결정 받은 그 외 부속시설 토지는 시설결정지, 시설 미결정인 경우 부속토지로 입력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집합건물에 대한 교육용 토지 보고 오류

연번	오류 사례
4	○○대학교에서 A아파트 601호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99㎡)을 교육용 토지에 포함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6층 제601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01.19㎡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661.9분의 99.06	2007년7월18일 대지권 2007년7월30일	

▲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정보

전체토지면적	99.00	교지전체면적	0.00
시설결정합계	99.00	학교법인(a)	99.00
		공유지	0.00
		사유지	0.00
미결정합계	0.00	학교법인(b)	0.00
		공유지	0.00
부속토지	0.00	미사용토지	0.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토지 보고내역

-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한 경우, 보유면적을 교육용 건물 현황에만 보고하고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면적을 교육용 토지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수익용기본재산과 중복 보고 오류

연번	오류 사례
5	○○대학교에서 동일 지번의 동일 면적(766㎡)을 수익용과 교육용 기본재산에 중복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관리회계	수익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관리여부	미설정	*등기부등본 고유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집합건물 여부	미설정		
*지번	926-1	*지목	답	*면적(소수점 2)	766.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천원)			0

▲ 동일지번 수익용기본재산 보고내역

*소재지	경상남도	주소검색	*지번	961	*지목	학교용지	
전체토지면적	766.00	교지전체면적				0.00	
시설결정합계	766.00	학교법인(a)	766.00	공유지	0.00	사유지	0.00
미결정합계	0.00	학교법인(b)	0	공유지	0.00		
부속토지	0.00	미사용토지	0.00	담보설정유무	미설정	담보설정액	0

▲ 동일지번 교육용기본재산 보고내역

▪ 당해연도 대학 시설현황 보고 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중복으로 보고된 면적이 없는지 사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함

예시	교육용	수익용	검토결과
해당 토지가 모두 교육용기본재산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766㎡	766㎡	X
	766㎡	-	O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토지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재산 변동사항 미반영 보고 오류

연번	오류 사례
6	○○대학교에서 보유한 A토지의 용도가 변경(교육용→수익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함

오류 예시



▲ 재산 용도변경(교육용 ↔ 수익용)

- 재산의 용도변경(교육부 허가)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용도에 맞게 변경 보고하여 같은 내역이 중복 입력되거나 재산 내역이 잘못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기본재산 용도변경 시에는 재단으로 처분(용도변경) 결과보고 후 승인 절차 필요하며, 그 후 시스템 상 변경 전 재산은 자동 삭제되며, 변경 후 재산은 직접 등재 필요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1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면적(550㎡)을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 평생교육원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생회관	체육관		도서관		대학본부
					면적	수용인원	면적	좌석수	
16,855	0	1,333	275	1,527	0	0	0	0	550

부속시설

특수시설		기숙사시설				계열 부속시설	기타시설
박물관	학군단	교직원 아파트		총·학장 공관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0	0	0	0	0	0	0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시설은 교육용 건물 중 **기타시설**로 입력하며, 건물 일부만을 활용하는 경우 평생교육원 시설면적은 기타시설로 그 외 면적은 해당 용도에 맞는 시설로 입력해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2	○○대학교에서 부속초등학교(4,30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시설로 보고하지 않음

오류 예시



▲ 부속초등학교

부속시설						기타시설	
특수시설		기숙사시설				계열 부속시설	기타시설
박물관	학군단	교직원 아파트		총학장 공간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0	0	0	0	0	0	0	430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부속병원, 부속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부속시설은 대학시설에 입력해야 하며, 실제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보고 시 부속병원 및 학교 전체 면적을 **부속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 ※ 부속학교 :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실습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 병설학교 : 법인이 설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3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500㎡) 면적을 계열별 부속시설 면적으로 보고함

오류 예시

▲ 산학협력단

정보전산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학칙으로 정한 시설
0	0	0	0

특수시설	기숙사시설				계열 부속시설	기타시설
	박물관	학군단	면적	세대수		
0	0	0	0	0	500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에 따라 산학협력단 면적은 교육기본시설로 분류
-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호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외부기업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관리 및 운영 중인 경우 교육기본시설 내 산학협력단 면적으로 입력함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4	○○대학교에서 미사용 건물을 과거 활용(ex. 교육기본시설) 되었던 용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보고함

오류 예시



▲ 기타시설 예시

지원시설

강당		실습공장(전문대만)		학생기숙사		합계으로 정한 시설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수용가능인원	
1,500	0	0	0	0	0	0

부속시설

특수시설		기숙사시설				계열 부속시설
박물관	학군단	교직원 아파트		총·학장 공관		0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0	0	0	0	0	0	0

기타시설

기타시설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대학이 보유한 모든 교육용 건물을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기타시설로 분류함

교사시설	구분
기타시설	① 캠퍼스 이전 및 폐지 등에 따른 미사용 건물 및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 ② 별동의 단독건물로 위치 한 주차장, 창고, 수위실, 관리실, 기계실 등 ③ 그 외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 교사시설의 구분 '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별동의 건물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오류사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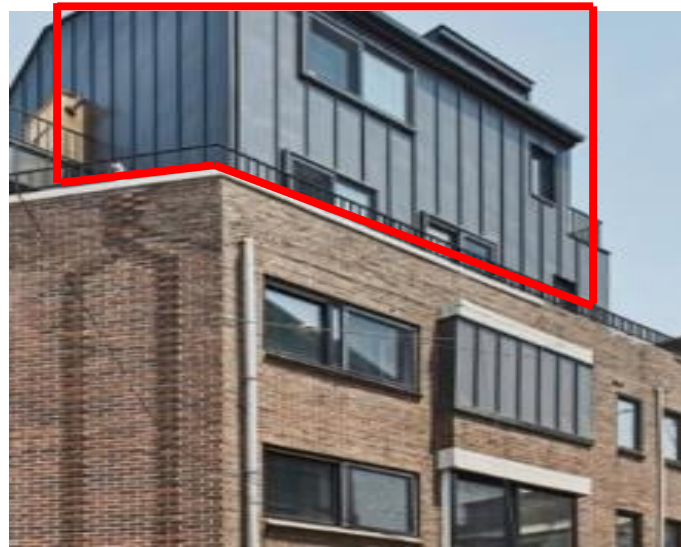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재산 변동 사항 미반영 보고

연번	오류 사례
5	○○대학교에서 증축된 면적(행정실 공간, 1,800㎡)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면적을 누락 보고하게 됨

오류 예시



▲ 기존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생회관	체육관		도서관		대학본부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좌석수	
500	0	0	0	150	0	0	0	0	2,000

1,80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교육용 건물 중 증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 **증축된 면적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함
- ex. 2025.05.30. 에 기존 건물에서 증축하였고 등기 완료 → 2026.04.01. 보고 시 증축면적 포함
- 반대로, **멸실된 건물**이 있는 경우 **오기감소신청**을 통해 보고된 내역을 변경하여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연구시설 및 학생기숙사 교사여부 충족 여부 미확인

연번	오류 사례
6	○○대학교에서 20km외에 위치한 A기숙사 보고 시 "교사여부충족" 여부에 미체크하여 교사면적에서 제외됨

오류 예시



▲ 20km외 위치한 기숙사

지원시설

강당		실습공장(전문대만)		학생기숙사	교사여부충족	학칙으로 정한 시설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수용가능인원	
0	0	0	0	5,000	0	0

해당될 경우 "✓"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20km 내, 외에 위치한 기숙사의 경우 교사 충족 요건이 되는 경우, "교사여부충족" 여부에 체크하여야 교사 면적으로 산입됨

구분	시설결정 여부	시설결정 여부	
		(학교) 시설결정	(학교) 시설미결정
교지경계선 내	교사 기준시설	교사 인정	교사 인정
20km 이내	연구시설	교사 인정	교사 미인정
20km 외	학생기숙사 및 연구시설	교사 인정	교사 미인정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 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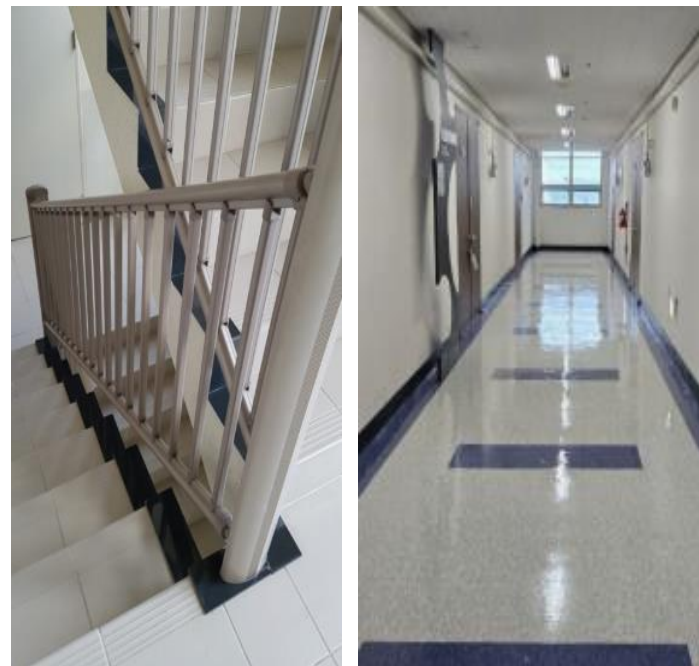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공용면적 미반영으로 인한 교육용 건물 면적 보고 오류

연번	오류 사례
7	○○대학교에서 보유한 A건물 내 공용 면적을 산입하지 않고 보고함

오류 예시



▲ 공용 면적 예시

+건축면적 0 | 확보율 산출용 건축면적 0 | +연면적 1,200 | +교사면적 1,200 | +공용면적 200 | 계산 초기화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생회관	체육관		도서관		대학본부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좌석수	
480	0	240	300	180	0	0	0	0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토지 보고내역

▪ 화장실,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면적은 교육용 건물 순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거나 시스템 공용면적 계산기를 통해 계산 후 보고해야 함

※ 예시(연면적 1,200㎡, 순면적 1,000㎡, 공용면적 200㎡인 교육용 건물)

구분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생회관	행정실	합계
순면적(A)	400	200	150	250	1,000
순면적(비율)	40%	20%	15%	25%	100%
비율에 따른 공용면적(B)	80	40	30	50	200
최종면적(A+B)	480	240	180	300	1,200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임차한 건물을 학교법인의 교육용 건물로 포함하여 보고

연번	오류 사례
8	○○대학교에서 2026.01에 임차한 A프라자를 학교법인의 교육용 건물로 보고함

오류 예시



▲ 임차 건물(빌리는행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생회관	체육관		도서관		대학본부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좌석수	
500	0	0	0	150	0	0	0	0	0
정보전산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학칙으로 정한 시설			
0		5,000		1,000		0			

“임차”는 입력 미대상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임차(빌리는 경우) 내역은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미입력” 대상
- 임대(빌려주는 경우) 내역은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입력” 대상
- 해당 임대면적을 학생후생복지 또는 일반임대시설에 구분하여 면적 분류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9	○○대학교에서 △△인문관 1층을 사무실(300㎡) 및 편의점(250㎡) 용도로 임대를 주었으나, 해당 면적을 잘못 분류하여 보고함

오류 예시



▲ 인문관 1층 임대 현황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생회관	체육관	도서관	대학본부
면적	수용가능인원	면적	좌석수	면적	면적	좌석수	면적
0	0	0	0	250	0	0	0

임대시설

학생 후생복지시설
0

일반 임대시설
0

기타시설
30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임대면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학생후생복지시설 및 일반임대시설)하여 입력

구분	교내 구성원 복지 및 편의	그 외
학교 직접 운영	학생회관	기타시설
외부 위탁 운영	임대시설-학생후생복지시설	임대시설-일반임대시설
교사 인정 여부	교사포함	교사 미포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오류사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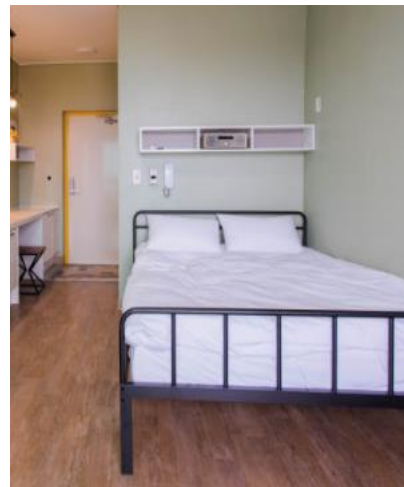
05 공시자료 확인

☑ 교육용 건물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건물 세부면적 오분류

연번	오류 사례
10	○○대학교에서 게스트하우스, 교직원아파트의 면적을 학생기숙사 면적으로 보고함

오류 예시



게스트하우스



교직원아파트

지원시설

강당		실습공장(전문대만)		학생기숙사		학칙으로 정한 시설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100	10	0	0	500	10	100	

부속시설

특수시설		기숙사시설		총·학장 공간		계열 부속시설		기타시설	
박물관	학군단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0	0	0	0	0	0	0	0	0	0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건물 보고내역

-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에 따라 **교직원 아파트, 총장 공간 등은 부속시설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음.
-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학생기숙사는 학교 소유로 학생이 이용하는 기숙사인 경우** 해당 면적으로 분류하여야 함
※ 교직원 숙소, 관사, 일반인 대상 게스트하우스, 단기어학연수생, 임차 기숙사 등은 제외)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지침안내

03 공시항목안내

▶ 04 주요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확인

☑ 기준면적 산출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입학정원 적용 산출 기준 오적용

연번	오류 사례
1	○○대학교에서 입학정원 산정 시 인문계열 입학정원을 자연계열 입학정원으로 오분류함

오류 예시

구분	계열	입학정원 반영			수업연한	총 시설정원
		학부 정원내 인원				
		주간	야간	MAX		
A학과	인문	50	40	50	4	200
B학과	자연	45	-	45	4	180
C학과	공학	50	30	50	4	200

구분	계열	입학정원 반영			수업연한	총 시설정원
		학부 정원내 인원				
		주간	야간	MAX		
A학과	인문	30	40	40	4	160
B학과	자연	65	-	65	4	260
C학과	공학	50	30	50	4	200

구분	기준면적 산출		
	총 시설정원	1인당 기준면적	총 기준면적
인문	200	12	2,400
자연	180	14	2,520
공학	200	14	2,800
합계			7,720

구분	기준면적 산출		
	총 시설정원	1인당 기준면적	총 기준면적
인문	160	12	1,920
자연	260	14	3,640
공학	200	14	2,800
합계			8,360

- 계열별로 입학정원을 잘못 반영하였을때 기준면적이 상이하게 산출되어 확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칙 및 내부 증빙자료에 맞게 학과별·계열별 정원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기준면적 산출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입학정원 및 재학생 산출 기준 오적용

연번	오류 사례
2	○○대학교에서 입학정원 및 재학생 인원 산정 시 기준을 잘못 적용함

오류 예시

입학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구분	정원내		정원외		구분	정원내		정원외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학부*	0	0	X	X	학부*	0	0	0	0
대학원	0	X	X	X	대학원	0	X	0	X

* 학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입학정원 모두 반영하되 주간 및 야간 입학정원 중 최대값으로 최종 반영됨

▪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x 수업연한)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x 수업연한)

▪ 재학생기준 : 정원내·외(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x 수업연한) + 정원내·외 대학원(주간 재학생)

※ 재학생 제외 인원 :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기준면적 산출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입학정원 산출 기준 미적용

연번	오류 사례
3	2011년도에 설립된 ○○대학교에서 총 시설정원이 산출 시, 학생정원 적용 기준을 미적용하여 입학정원 기준 기준면적이 잘못 산출됨

오류 예시

학급	계열별	입학정원기준		
		학부 시설정원(A)	대학원 시설정원(B)	총시설정원 (A + B)
전문대학	인문사회	0	0	0
전문대학	자연과학	0	0	0
전문대학	공학	0	0	0
전문대학	예체능	480	0	480
전문대학	의학	0	0	0
전문대학	전문대 간호학과4년	0	0	0
	합계	480	0	480

▲ 2011년도 설립된 ○○대학교
(정원이 1,000명 미만이었으나, 환산하지 않음)

▪ 설립연도에 따른 학생정원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함

설립연도	내용
2005.10.24. 이전	본교, 분교 및 캠퍼스에 상관없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100명)으로 환산
2005.10.25. 이후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단, 운영 중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면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200명)미만인 경우,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 200명)으로 환산입력

4. 대학 정보공시 오류 사항 안내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 사항 안내

05 공시자료 확인

☑ 기준면적 산출 관련 주요 오류 사항

▶ 사이버대학교 기준면적 산출 기준 미적용

연번	오류 사례
4	○○사이버대학교는 시설정원 산출 시, 당해연도 입학정원에 계열별 수업연한을 곱하여 시설정원을 산출함

오류 예시

학부					대학원				
학과명	학부 정원내 모집인원			수업연한(B)	시설정원 (A X B)	학과명	대학원 주간 정원내 모집인원(A)	수업연한(B)	시설정원 (A X B)
	주간(a)	야간(b)	max(A)						
합계	685.0					합계	90.0		
A학과	100.0		100.0	4.0	400.0	D학과	30.0	1.0	30.0
B학과	50.0		50.0	4.0	200.0	E학과	40.0	1.5	60.0
C학과	85.0		85.0	1.0	85.0				0.0

▲ 사이버대학의 경우 일부 학과 입학정원 산정 시, (학부) 수업연한을 곱하여 산출 및 (대학원) 수업연한 x 1.5를 적용하지 않음

- 사이버대학의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입학정원 산출방법 적용

구분	입학정원	
	대학	대학원
대학원이 '없는' 사이버대학	입학정원	-
대학원이 '있는' 사이버대학	입학정원	입학정원 x 1.5

I 5. 대학 정보공시 자료 확인 방법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안내

03 공시 항목안내

04 주요 오류사항안내

▶ 05 공시자료 확인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자료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비교법

▶ <14-라> 입력 항목별 데이터 확인 방법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학종	구분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임대시설	교사면적	
전문대	교지경계선 내	68,449	6,273	-	-	7,981	1,073 (613)	1,073 (460)	75,335
	20km 이내	-	-	-	2,009	-	-	-	-
	20km 외	-	1,405	-	319	-	-	-	1,405

대학알리미(14-라 공시)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43,505	39,000	69,062	7,678	-	-	8,441	175.0	193.2

- 기본시설 : 교지경계선 내의 기본시설(68,449㎡) + 임대시설(학생후생복지시설)(613㎡) 면적이 반영되어 69,062㎡로 공시
- 지원시설 : 교지경계선 내의 지원시설(6,273㎡) + 20km 외 학생기숙사* 면적(1,405㎡)이 반영되어 7,678㎡로 공시
* 교사여부충족이 되어 교사면적으로 보고
- 부속시설 : 20km 이내 · 외 부속시설 면적이 존재하지만, 정보공시에는 “교지경계선 내” 면적만 반영하므로 “0㎡”로 공시
- 기타시설 : 교지경계선 내의 기타시설(7,981㎡) + 교지경계선 내의 임대시설(일반임대시설)(460㎡) 면적이 반영되어 8,441㎡로 공시

5. 대학 정보공시 자료 확인 방법

01 집계안내

02 입력 지침 안내

03 공시 항목 안내

04 주요 오류사항 안내

▶ 05 공시자료 확인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자료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비교법

▶ <14-라> 입력 항목별 데이터 확인 방법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학종	계열별	입학정원기준		총 시설정원(A+B)
		학부 시설정원(A)	대학원 시설정원(B)	
전문대	인문사회	1,160	100	1,260
	자연과학	990	200	1,190
	공학	520	-	520
	예체능	700	-	700
	의학	-	-	-
	전문대 간호학과 4년	630	-	630
	합계	4,000	300	4,300

기준면적 산출
▶ 10,584(1,260x12㎡x70%)
▶ 11,662(1,190x14㎡x70%)
▶ 5,096(520x14㎡x70%)
▶ 6,860(700x14㎡x70%)
▶ -
▶ 8,848(630x14㎡)

대학알리미(14-라 공시)									
공시 항목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외			
	입학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14-라	43,050	39,000	69,062	7,678	-	-	8,441	175.0	193.2

▪계열별 시설정원 x 1인당 교사면적 x 70%(전문대학일 경우 적용)을 적용하여 합산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 적용
 ※ 단, 간호학과 4년제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정원만큼은 4년제 대학의 기준 적용
 (산출) (인문 1,260명 x 12㎡ x 70%) + (자연 1,190명 x 14㎡ x 70%) + (공학 520명 x 14㎡ x 70%) + (예체능 700명 x 14㎡ x 70%) + (간호 630명 x 14㎡)

2026년 대학정보공시 연수 「교지 및 교사 시설현황」

감사합니다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동영상 입력매뉴얼 안내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재정통계분석부
☎ 053.770.2582 or 2590